瑞山市小河川占用料等徵收條例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7. 10. 7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7. 9.12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7. 9.19
라. 上程日字 : 1997. 9.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建設課長 尹炳珪)

가. 提案理由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o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 부과징수조례』로 함.
- o 산정기준이란 용어대신 법규적 성격을 갖는 " 부과기준" 으로 함(안 제2조).
- o 점.사용료 징수에 있어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점.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징수했다하더라도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본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o 현행 조례 제2조 『산정기준』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점.사용료의 수입은 부과와 징수 2단계로 이루어 지며, 산정기준이라하면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써 지침정도에 불과하는 효력밖에 없고, 부과기준이라 한다면 행정청과 주민까지도 규제하게 되는 법규의 성질을 띄우게 되므로 『부과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o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점.사용료는 기간에 직결되어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데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점.사용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 응익성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항의 제명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이라고 규정해 놓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본문규정은 논리상 모순이라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음

5. 討　　論 : 없음

6. 少數意見 : 없음

7.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제안번호	제 194 호
의결년월일	1997. . . (제 회)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9. 12.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

제출년월일 : 1997. 9. 12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 이유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로 함.

나. 산정기준이라는 용어 대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부과 기준"으로 함(안 제2조).

다. 점·사용료 징수에 있어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점·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징수했다 하더라도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0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독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사용료등의 부과기준) ①점·사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등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점·사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개시일 또는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월로 본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사용기간에 대한 당해 인도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사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사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부과한다.

②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사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 등에 있어서의 점·사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징수방법) ①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점·사용 허가시 또는 점·사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하천법시행규칙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현금 또는 서산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점·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6조(납부한 점·사용료 등의 반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